

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5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4. 10. 4

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 외 6인

1. 개정이유
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이 개정(2000.1.28, 2000.5.16)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외부전문위원을 보강하고,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중 임명직 위원 7인을 5인이내로 2인을 줄이는 대신 외부전문가 위원을 현재 8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2인을 늘리고,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(안 제2조제3항제2호).
- 나.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의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(안 제3조제2항).
- 다. 조문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, 문맥을 고르게 하며 일부조문을 신설함 (안 제4조제2항·제3항 및 제6조).

3. 관계법규

-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
-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

4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수반사항 : 없음
- 나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중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중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중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를 삭제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중 “7인”을 “5인”으로 하고, 동항제2호중 “8인”을 “10인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중 “위원 위촉”을 “위원의 위촉 및 해촉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
2.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

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

제4조제2항중 “사고가 있을 때에는”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의2중 “필요한 경우에는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가공시및토지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(생략) 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관계공무원 중 7인 이내 2. 제3조에서 정한 자중 8인 이내</p> <p>제3조(위원 위촉) (생략) 1.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. 한국감정원직원 3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제4조(위원장등 직무) ①(생략)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삭제>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구성) (현행과 같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----- 5인 ----- 2. ----- 10인 -----</p> <p>제3조(위원의 위촉 및 해촉) ①(현행과 같음) 1.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.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</p> <p>제4조(위원장등 직무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-----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제6조의2(소위원회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3내지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수당지급)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6조의2(소위원회) -----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